

공 고

공 고 : 제18호

1987. 11.

제 목 : '88년도 상반기 의료보험증(원격지의료보험증 포함) 검인 실시

1. 의료보험증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88년도 상반기 의료보험증(원격지 의료보험증 포함) 검인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- 다 음 -

치 과 의 사

구 분	검인일정	검 인 장 소	서울지역	검 인 일 정	검인장소
부 산	87. 12. 8	부산시치과의사회	종 로	12. 2 (수)오전	치과의사회
대 구	87. 12. 11	대구시치과의사회	중 구	"	"
인 천	87. 12. 8	인천시치과의사회	용 산	"	"
경 기	87. 12. 8	경기도치과의사회	성 동	"	"
강 원	87. 12. 11	강원도치과의사회	강 서	"	"
충 북	87. 12. 10	충청북도치과의사회	영 등 포	"	"
충 남	87. 12. 8	충청남도치과의사회	동 대 문	12. 3 (목)오전	"
전 북	87. 12. 8	전라북도치과의사회	성 북	"	"
광주·전남	87. 12. 8	광주시치과의사회	도 봉	"	"
경 북	87. 12. 11	경상북도치과의사회	은 평	"	"
경 남	87. 12. 11	경상남도치과의사회	서 대 문	"	"
제 주	87. 12. 12	제주도치과의사회	마 포	"	"
			구 로	12. 4 (금)오전	"
			동 작	"	"
			강 동	"	"
			강 남	12. 5 (토)	"
			관 악	"	"

(단, 소속의사회에 지정기일 전날까지 제출)

2. 본 기간에 검인치 않을시는 보험급여가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람.

의 료 보 험 조 합

끈질긴 친절은 악한자를 정복한다.

◁ 대한치과의사협회 사회정화추진위원회 ▷